

한국환경공단의 재활용실적 인정기준 실무 적용 방안 주요 내용 (발포합성수지 중심으로)

EPR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활용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일부 개정(환경부 예규 432호, 2011. 3. 11., '환경사랑 59호 9쪽 참조)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의 재활용실적 인정기준의 실무 적용 방안이 확정되었다. 이에 따라 협회 참여 재활용사업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확정 된 주요 내용을 다시 한 번 정리해 소개한다.

1 개정된 재활용 실적 인정의 적용 일시: 2011년 1월 1일

- 환경부예규 개정일(2011.3.11) 이전의 실적 자료에 대해서는 보강자료 첨부시 인정토록 환경부 건의 중

2 발포합성수지의 반입 자료

- 발포합성수지는 부피가 크고 중량이 작은 품목의 특성상 반입 자료인 계량증명서는 제출 면제.
- 관리대장 인정: 철저한 검증이 예견됨에 따라 작성에 유의 요망

3 발포합성수지(잉고트, 펠릿, 철골내화피복재, 섬유코팅제 등)의 매출(판매) 자료

- 계량증명서와 세금계산서는 필히 제출
- 계량증명서의 필수 기재 사항(아래사항 미기재시 실적 불인정)
* 계량표의 일련번호, 계량일시, 차량번호, 총중량, 공차중량 ※수기로 작성된 계량증명서는 실적이 인정되지 않음

4 주요 사례 설명

- 일련번호가 기입되지 않은 계량증명서 인정 여부: 미인정
- 총중량과 공차중량 시간이 동일(1도 계량)한 경우?
- 민간 재활용사업자의 자체 계량대 계량 자료는 미인정. 공인계량소 및 지자체의 경우만 인정하나 가급적 지양 유도
- 재활용 제품 매출 부분에 있어 계량증명서를 타 증빙 서류로의 대체 가능성 여부?
- 불인정. 다만 계량시스템 개선(인디케이트 설치)을 통해 발행된 것은 인정
- 재활용 제품 매출 부분에 있어 일정 출하 단위(섬유코팅제 100kg, 펠릿 25kg, 500kg 등)로 판매되는 경우 실적 인정은?
- 불인정. 매출 자료는 필수사항을 기재한 계량증명서 첨부해야 함

5 허위 회수 · 재활용실적 제출에 대한 제재 사항

- 적발된 비율이 1%미만의 허위 회수 · 재활용실적: 주의
- 적발된 비율이 1 ~ 5%미만의 허위 회수 · 재활용실적: 경고(2회이상 경고시 1년간 자격 제한)
- 적발된 비율이 5 ~ 24%미만의 허위 회수 · 재활용실적: 1년간 자격 제한
- 적발된 비율이 25%이상: 2년간 자격 제한

※ 적발된 비율 = 허위 회수 · 재활용실적 ÷ 의무이행결과보고서상의 회수 · 재활용실적량